# 전자금융감독규정

# <목 차>

- 1.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최저 보상한도 상향
- 2.재해복구센터 구축의무 범위 확대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이름	장희진
소관부처 및	담당부서 (과)	금융안전과	작 성	직급	사무관
작성자 인적시항	국장	전요섭	자	연락처	02-2100-2979
	과장	김수호		이메일	2081046@mail.g o.kr

2024. 01. 17.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 규제 개요 >

	1.규제사무명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최저 보상한도 상향					
기본	2.규제조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조제1항				
정보	3.위임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외	9조제4항				
	4.유형	강화	5.입법예	고 202	24.02.01~2	024.03.12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O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최저보상한도가 '13년 이후 변경 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일부 업권의 보상한도를 현실화				
규제의 필요성	7.규제내용	(안 제5조 제1항) - 특히, 최근 3 금융투자업자에 조 * 금투업자 : 일 2호), 여전사·보 업·PG 등 : 1억	의부 업권의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최저보상한도를 현실화 안 제5조 제1항) - 특히, 최근 3년간 전자금융사고가 자주 발생한 자산 2조원 이상 금융투자업자에 적용되는 최저 보상한도를 상향 * 금투업자: 일괄 5억원 → 자산 2조원 이상 금투업자 10억원(제호), 여전사·보험사·저축은행 : 1억원 → 2억원(제4호), 선불 섭·PG 등 : 1억원 → 2억원(제7,8호) * 기타 : 기존 내용 조정에 따른 호 신설 (제6,9,10,11,12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도 피규제자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3,245개			규모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금융소비자 보호					
			비용	편익	í	순비용	
		피규제자					
	40 미오퍼이터서	피규제자 이외					
규제의	<b>10.비용편익분석</b>   (단위:백만원)	정성분석					
적정성	·- · · <del></del> /	주요내용					
	11.영향평가	기술영향평기	· 경쟁영향	향평가	중기영	향평가	
	여부	해당없음	해당입	해당없음		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일몰설정1. 국제	조약 등에 따라 동	<b>소분류</b> ·일하게 적용	용 되어야	미해당	

		하는 규제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예외기준 관련된 규제				전과 직접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4. 국민과	· 기업의 경제활	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여부기준	5. 경제활	동에 직접영향	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6. 피규제	자의 규제부담	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세부기준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적인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	여부		
	미실	설정				
	일몰유형		일몰설	일몰설정기간		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적용0	1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	등순비용
(단위:백만원)	미적	용	0	0	C	)
15.규제정비 계획	전자금융감독규정 부칙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제5조(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기준) ① 금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기준) ① -
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	
9조제4항에 따라 전자금융사고 책	
임이행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	
입하는 경우 보상한도는 <u>다음</u> 각 호	전자금융거래
에서 정하는 금액 <u>이상이어야</u> 한다.	규모, 전자금융사고 발생 건수 등을
	<u>고려하여 다음</u> <u>이상으로 설</u>
	<u>정해야</u>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8호의 회사,	법률」 제38조제2호(다만, 명의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	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는
나목(신용카드업자에 한한다) 및	제외)의 회사 중 자산이 2조원 이
다목의 회사, 「전자금융거래법	상인 회사, 같은 법 제38조제8호
시행령」 제2조제1호의 회사,	
「은행법」에 따른 지방금융회사	
및 같은 법 제58조에 의해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 :	
10억원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3
법률」 제38조제2호(다만, 명의	
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는	
제외)의 <u>회사 :</u> 5억원	
	회사 중 자
	산이 2조원 미만인 회사 :
4. 제1호 부터 제3호 이외의 금융회	

현 행	개 정 안
사 : <u>1억원</u> . 다만, 제1호 부터 제3	<u>2억원</u>
호 이외의 금융회사들이 관련 법	
령에 의해 당해 금융회사를 구성	
원으로 하는 금융회사를 통해 전	
자금융거래 관련 정보기술부문의	
주요부분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	
우, 정보기술부문의 주요부문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공동 이용	
금융회사 전체의 사고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제2호의 금액(시행령	
제2조제5호의 금융회사는 제1호	
의 금액) 이상의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하면 공동 이용 금융회사	
는 본호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한 것으로 본다.	
5. 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5. <u>법 제28조제2항제1호</u>
의 전자금융업자 : 2억원	
<u>&lt;신 설&gt;</u>	6.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전자금
	<u> 융업자 : 2억원</u>
<u>6</u> .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전자금	<u>8</u>
융업자 <u>중</u> 제1호 또는 제2호에 속	<u>: 2억원(단,</u> -
하는 금융회사가 발급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거래지시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의 정보를 저장하는 <u>전자</u>	
금융업자 : 10억원	
	전자금융업자는 10억원)

현 행	개 정 안
<u> </u>	9.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의 전
	자금융업자 : 2억원
<u> &lt;신 설&gt;</u>	10.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의 전
	자금융업자 : 2억원
<u>&lt;신 설&gt;</u>	11. 법 제28조제1항의 전자금융업
	<u>자 : 2억원</u>
7. 제5호, 제6호 이외의 전자금융업	7.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전자금
자 : 1억원	<u> 융업자 : 2억원</u>
<u>&lt;신 설&gt;</u>	12. 제1호부터 제11호에 2개 이상
	해당하는 회사는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11호의 합계액이 15억원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11
	호의 합계액을 15억원으로 한다.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최저보상한도가 '13년 이후 변경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거래액 확대,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일부 업권의 보상한도를 현실화\*\*할 필요
  - \* 업권별로 최대 20억원(은행). 최소 1억원(보험사, 여전사, 저축은행, 선불업 등)
- \*\* 선불업·PG 등 : 1억원 → 2억원, 여전사·보험사·저축은행 : 1억원 → 2억원
- 특히, 최근 3년간 전자금융사고가 자주 발생한 자산 2조원 이상 금융투자업자에 적용되는 최저 보상한도를 상향
  - \* (현행) 금융투자업자 일괄 5억원 → (개선) 자산 2조원 이상 금융투자업자 10억원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비교
-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조의 최저 보상한도 유지			
25T/10	내용	현행안 유지			
	대안명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최저 보상한도 상향			
규제대안1	IUΩ	전자금융 거래액 확대,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네ㅎ	일부 업권 보상한도를 현실화			

###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	책임이행보험 최저 보상한도가 '13년 이후 변경이 없어서 거래액 확대,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22년 국정감사(10.24) 시정 요구사항임
규제대안1	최근 3년간 전자금융 사고가 자주 발생한 금융투자업권 등의 최저 보상한도를 상향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	피규제자의 비용부담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피규제자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 ('23.11.9, 금융투자협회)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
- \* 동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
- 금융협회 등을 통해 피규제자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지속

###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전자금융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변화된 **전자금융거래 규모** 및 **물가상승 등**의 **현실을 반영** 

### 3. 규제목표

○ 전자금융사고의 발생시 금융소비자의 피해 최소화

###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가 비례적 타당성
- o 해당 개정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o 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임에도 재해 복구센터 구축의무가 없는 회사를 대상\*으로 **구축의무를 부과** 
  - \* (기준안) ①전금업자: 총거래액 2조원 이상(36개사,(28개사 기구축)) ②여신전문금융회사: 총자산 2조원 이상(10개사,(6개사 기구축)) ③저축은행: 자체전산 저축은행(12개사,(12개사 기구축))
  - 기준안을 따를시, 58개社가 의무대상에 편입되나 이 중 47개社가 이미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하여 규제부담이 크지 않음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b>중기영향평가</b> □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 해당사항 없음

###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동 개정은 피규제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피규제자의 **적극적인 준수**가 예상됨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감독기관의 관리· 감독상 추가적인 부담 없음
-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o 특이사항 없음
- 2. 향후 평가계획
- o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통해 **규정 준수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해 나갈 계획
- 3. 규제 정비계획
- 개정안 발표 후 **6개월간의 유예규정을 부여**하여 피규제자 **부담을 경감**할 예정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전자금융감독규정	부칙	해당 규정의 시행일에 대해 6개월의 유예규정을 부여	시행일 이후 6개월

# 4. 종합결론

o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전자금융사고 및 전자금융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해 일부 업권의 책임이행보험 최저 보상한도를 현실화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 규제 개요 >

	1.규제사무명	재해복구센터 구	<sup>1</sup> 축의무 범위 획	대				
기본 정보	2.규제조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제8항					
	3.위임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2	21조제2항					
	4.유형	강화	강화 <b>5.입법예고</b> 2024.02.01~2024.0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규제의 필요성	7.규제내용	술) ②저축은행, 제23조제8항) * (기준안) ①충 호), ②자체전산 래액 2조원 이상(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O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유 형 미규제자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인원수 또는 규모 199개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금융회사 및 전	선금업자의 업무연	속성 확보				
			비용	편익	순	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7.71.01	10.비용편익분석	정성분석						
규제의 적정성	(단위:백만원)	주요내용						
	11.영향평가	기술영향평기	· 경쟁영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	었음 		
		대분류		소분류				
기타	12.규제일몰제	일몰설정 하는 규				미해당		
		예외기준 2. 국가 관련된	의 질서 유지 및 규제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들	골조문	연장	연장여부	
		미설	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민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	등순비용	
		미적용		0	0	(	)	
	15.규제정비 계획	전자금융검	금융감독규정 부칙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비상대책 등의 수립・운용)	제23조(비상대책 등의 수립・운용)
⑧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는 시스템	8
오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산센	
터 마비에 대비하여 업무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인력	
을 구비한 재해복구센터를 주전산	
센터와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안전	
한 장소에 구축・운용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6의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
	기술사업금융업자(다만,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회
	사에 한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u>상호</u>	8
<u> 저축은행중앙회</u>	<u>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u>
	자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u>하는 상호저축은행</u>
9. • 10. (생 략)	9. • 10.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11.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전
	자금융업자(다만, 연간 전자금융
	거래 총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에
	한한다.)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카카오 화재** 이후 **업무연속성 확보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 재해복구센터 구축의무가 없는 **중소금융사,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화재 등 **재해발생에 취약**한 측면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비교
-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제8항 유지하는 방안		
25차시킨	내용	현행안 유지		
규제대안1	대안명	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제8항 개정으로 재 복구센터 설치의무를 확대하는 방안		
ㅠ세네진	내용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전금업자, 여전사, 저축은행에 대해 DR센터 구축을 의무화		

###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	재해 발생시 금융회사 등의 업무연속성 확 보 위협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규제대안1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회사, 전자 금융업자의 신속한 업무연속성 회 복이 가능	피규제자의 비용부담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피규제자인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 ('23.11.9, 금융투자협회)하여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 
  - **(건의사항) 일부 여전사**가 재해복구센터 설치의무 부과의 기준을 **규모 外 사회적 영향도를 감안한 기준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
  - → 규모(자산, 종업원수) 외에 영향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를 협의·검토\*하였으나, 적절한 기준 산출의 어려움으로 반영 제외
    - \* 관련 지표로서 '전자금융거래 규모'를 제안하여 반영 여부를 검토했고, 협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검증 가능한 정보 산출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음

- 다만, 개정안 발표 후 6개월간 유예규정을 부여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

###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재난 뿐 아니라 해킹 등과 같은 사이버 위협의 지속적인 증가로 위기 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대비가 긴요

#### 3. 규제목표

- 재해 등 위기 발생시 업무연속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

####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o 해당 개정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o 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임에도 재해 복구센터 구축의무가 없는 회사를 대상\*으로 **구축의무를 부과** 
  - \* (기준안) ①전금업자: 총거래액 2조원 이상(36개사,(28개사 기구축)) ②여신전문금융회사: 총자산 2조원 이상(10개사,(6개사 기구축)) ③저축은행: 자체전산 저축은행(12개사,(12개사 기구축))
  - 기준안을 따를시, 58개社가 의무대상에 편입되나 이 중 47개社가 이미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하여 규제부담이 크지 않음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 해당사항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해당 개정은 피규제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피규제자의 적극적인 준수가 예상됨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감독기관의 추가적인 관리·감독상 부담 없음
-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없음

###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o 특이사항 없음
- 2. 향후 평가계획
- o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통해 규정 준수여부 등을 점검해 나갈 계획
- 3. 규제 정비계획
- o 개정안 발표 후 6개월간의 경과규정을 부여하여 피규제자 부담을 경감할 계획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전자금융감독규정	부칙	해당 규정의 시행일에 대해	시행일 이후
		6개월의 경과규정을 부여	6개월

### 4. 종합결론

o 재해 뿐 아니라 해킹 등과 같은 사이버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환경을 고려할 때,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회사 등에게 재해복구센터 구축을 의무화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